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4509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45091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2. 4 선고 2020가단133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

담당변호사 권구철

변론종결 2021. 8. 13.

판결선고 2021. 9. 10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가단133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. 6. 10. 접수 제42839호 및 같은 법원 2015. 12. 3. 접수 제954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준서, 판사 권현영, 판사 조윤정

별지